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37
----------	-----

제출일자 : 1997. 9. 25.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정여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등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나)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